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782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7829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3나745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가합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A

판결 선고 2015. 6. 24.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3나74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경정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07. 8. 13. 판시와 같이 원고와 '무배당LIG웰빙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그 후 2008. 2. 5.부터 2013. 4. 10.까지 36회에 걸쳐 총 입원기간 760일과 총 통원기간 10일 동안 입·통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42,644,291원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4.부터 2013. 4. 10.까지의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B병원에 입원한 2012. 8. 6.부터 2012. 9. 6.까지, 2012. 9. 24.부터 2012. 11. 16.까지, 2012. 11. 29.부터 2012. 12. 21.까지, 2013. 3. 9.부터 2013. 4.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2008. 2. 5.부터 2012. 7.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0년 세무서에 1,737,000원의 소득신고를 한 것 외에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2011. 3. 2.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폐업하였으며, 2012. 2. 24.부터 의료급여1종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11. 1.까지 약 9건의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소득 내지 재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입원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2011년과 2012년은 피고가 다방을 폐업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시기인바, 피고에게 소득이 없었던 시기에 입원기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 2. 5.부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증·경추부 및 양 견갑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병증으로 17일 동안 입원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약 5년 2개월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2008. 2. 5.부터 2013. 4. 10.까지 입원횟수가 총 36회, 입원기간이 총 760일이고, 이러한 입원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 합계가 42,644,291원에 이른다. 피고의 입원병명,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원횟수와 입원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다.

(4) 특히 피고는 산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10. 11. 10.부터 2010. 12. 9.까지 30일간 '양 슬내장·요추부염좌·양 고관절부 염좌' 등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가, 이 병원에서 퇴원한지 20일 만인 2010. 12. 29.부터 2011. 1. 27.까지 30일간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양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으로 B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인 2011. 1. 27.부터 2011. 2. 10.까지 15일간 '좌 발목거골골절 · 인대 파열·요추4-5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H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1. 2. 11.부터 2011. 2. 25.까지 15일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간의 기타 질환'으로 I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1. 2. 26.부터 2011. 3. 24.까지 27일간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H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1. 3. 25.부터 2011. 4. 5.까지 12일간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I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인 2011. 4. 6.부터 2011. 4. 25.까지 20일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술후 상태·하지 방사통·당뇨병'으로 B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이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 내지 그 다음날 바로 이전에 발병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

(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입원병명, 치료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원 기간에 검사와 약물 투여, 물리치료가 주요 진료내용이므로 굳이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는 없고, 전반적인 입원 과정을 보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회보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피고의 병명, 입원 횟수 및 그 기간, 보험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2008. 2. 5.부터 2012. 7. 1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제1심 판시 113일(보험금 12,062,205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 부분도, 피고가 실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은 바 없거나 상해 내지 질병이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기간 동안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은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